
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

2019. 2.



법무부

I. 국민을 위한 법무·검찰 혁신

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검찰개혁

○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입법화

-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입법화 추진
- 법안 통과를 위해 사개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

○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

- 법무행정의 전문성·지속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
- '19.3.까지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(개별사건 15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)에 대한 조사·심의 완료,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

○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및 수사전문성 강화

- '18.12. 시행된 「검사인사규정」 및 「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을 철저히 적용하여 검사 인사의 공정성 제고
- 분야별 전문수사 인력을 양성하고, 지역 특성과 전문분야를 감안한 중점검찰청을 지정·운영함으로써 형사부의 전문성 강화

※ 서울서부(식품의약품안전), 의정부(환경), 대전(특허) 등 11개 청 운영

○ 검사 징계제도 개선

- 법관징계법과 동일하게 기피·회피 제도 도입,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조정하고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검사징계법」 개정안 입법 추진

○ 검찰 수사기능 조정

- 검찰 직접수사 총량 축소, 인력 재배치,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형사부·공판부 역량 강화
- 공안부서 명칭 변경, 안보·노동 등 분야별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

②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법무행정

○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정책

-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'명예 보호관찰관' 확대 및 '명예 소년원교사' 제도 도입, 종교·사회단체가 참여하는 '민영소년원' 신설
- 교정 분야의 조직·인력 및 업무처리 절차를 진단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'국민참여 조직진단' 추진

※ 안양교도소 등 4개 기관 방문 및 집중토론('19. 3.), 결과보고회('19. 4.)

○ 사람 중심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

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근절과 성차별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('19. 상반기)
- 유연근무제 실시, 초과근무 감축, 연가사용 활성화, 남녀 차별 없는 육아휴직 사용, 모성보호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등 적극 권장
-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권 보장 법제화를 신속 추진

II. 공정사회 구현

① 생활적폐 엄단

○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적폐 집중 수사

- 공공기관 채용, 재건축·재개발, 안전분야 등 각종 비리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토착비리 수사

○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'갑질행위' 처벌 강화

- 회사 대표의 직원에 대한 갑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 확산, 폭력 등 일상화된 우월적 지위 남용 범죄의 처벌기준 강화

○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비리구조 개선방안 마련

- 클린피드백 시스템 활용,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을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부패유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

② 공정경제 입법

○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「상법」 개정

- 다중대표소송제 도입,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,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추진

○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'집단소송제' 확대

-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, 부당공동행위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 추진

○ 「공정거래법」 전면 개편에 따른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

-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 범죄,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·비용전가 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
-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

○ 실효적인 경제사범 관리 제도 정비

- 특정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'피해 기업체'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

○ 회사채·증권 투명화와 혁신을 위한 '전자증권제' 시행

- '19. 9. 16. 「주식·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목표

③ 법집행의 공정성 강화

○ '송무국' 직제화 추진

- 급증하는 국가송무 수요에 대응하고 비효율적인 국가송무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로 소송지휘권 일원화

○ 검찰 직권 재심청구 지속

- 과거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

○ 국민소송제도 도입

-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민이 손해 예방, 시정 및 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추진

○ 가석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

- 일선 교도소장의 가석방심사 재량을 축소하여 객관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

○ 국민이 공감하는 난민·외국인 정책

-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난민법」 개정 추진
-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되, '농어촌 계절 근로자' 등 국민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 외국인 수용

Ⅲ. 민생안정 실현

① 민생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

○ 서민의 안정적 주거·영업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

-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 추진
- 오피스텔·상가 등의 관리비 부과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「집합건물법」 개정 추진

○ 중소기업·소상공인·소액대출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

- 일괄담보제 등 편리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
- 소멸시효 통지의무 부과 및 소멸시효 만료 채권의 추심 제한

○ 차별과 학대로부터 장애인 보호

-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 개선 추진

○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체계 강화

- 범죄피해 구조대상 확대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구조금 분할지급제 도입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
-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충으로 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법률조력 강화

○ 서민다중피해범죄 집중 대응

- 유사수신·불법다단계·보이스피싱 등 다수 서민 대상 범죄 집중 단속, 종합적 대책 수립 및 수사지원을 위해 전담팀 운영

②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

○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치료·관리 강화

- 정신질환범죄자의 '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',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독립 처분으로 '정신질환 치료명령제도' 도입
- 치료감호소 만기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실시, 정신질환 소년원생 전담 의료소년원 기능 강화 추진

○ 청소년 범죄 예방 종합대책

- 촉법소년 연령 하향(14세 → 13세) 등 「소년법」 개정 추진
- 비행요인별 맞춤형 지도·감독 및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

○ 특정 범죄자에 대한 치료과정 신설 및 사후관리

- 가학적·변태적 성범죄자, 정신질환 수형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특별과정 추가 개설

○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

-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(57개), 성폭력·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개발 추진
- 가석방과 취업을 연계한 ‘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’ 도입

○ 여성·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재정비

-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 및 「스토킹처벌법」 정부안 발의,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재정비
- 여성아동범죄조사부(11개 지검) 및 전담 검사 지정·운영을 통한 효율적 대응체계 확립

IV.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

①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강화

○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

- 국제인권규약상 인권옹호 정책의 국내 이행 토대가 되는 「인권 기본법」 제정 추진
- 기업의 인권경영 표준지침 발간 등 구체적인 ‘기업과 인권’ 정책 마련

○ 여성·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

-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선,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지급제도 개선 추진
- 미성년자 성적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예 추진
- 노인·장애인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

○ 포용적 가족문화 구현 및 아동인권 향상

- 의료기관 출생통보제,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적극 검토

○ 구금·보호시설 인권침해사건의 직접 조사 확대

- 원거리 구금·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'화상조사시스템' 설치 확대('18년 40개 → '19년 47개)

② 인권친화형 형사사법시스템 구축

○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강화

- 대검 인권부에 배치된 '인권수사자문관'이 검찰 주요 수사에 대하여 '레드팀' 역할을 담당하여 검찰 수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 검토
-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 개선,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철저 보장

○ 포토라인, 심야조사,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

-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행 포토라인 및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방안 마련

※ 법무부,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수사공보준칙 철저 준수 등 특별지시('18. 7.)

- 실태조사, 개선안 시범실시,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심야조사 최소화 방안 마련('19. 상반기)

○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

- 국선변호 대상을 피고인에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 추진

○ 시대변화에 맞춘 형사사법체계 정비

- '영아살해죄', '농아자 필요적 감경' 형법규정 폐지 및 법정형이 '사형'인 조문 정비 검토
-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「형법」, 「형사소송법」 개정 추진

○ 통신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

-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,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규정 보완 등 「통신비밀보호법」 개정안 마련

③ 포용적 법무행정

○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정시설 현대화

-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용시설을 현대화하고, 장애인·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
-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현황 관리시스템 마련('19. 4.), 보호가 필요한 자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지원하는 체계 구축

○ 출국금지 제도 개선

- 출국금지 및 연장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설치·운영중인 「출국금지 심의위원회」의 활성화 및 심사기능 강화 방안 마련

○ 소년원 학생 생활환경 개선 및 학습권 보장

- 소년원 생활실 확충 등 과밀시설 개선, 여성 소년원생을 위한 고등 교과과정 신설 등 학생 선호도와 취업환경을 반영한 교육 실시

○ 재외동포,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

- 재외동포 적용범위를 3세대 이내에서 4세대 이후로 확대하는 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 개정('19. 8.),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추진
-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시스템 강화 및 맞춤형 법률교재 제작·배포 등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확대

○ 마을변호사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 및 법률홈닥터 활동 강화

- 전국 1,411개 읍·면·동에 마을변호사 1,409명 활동('18. 12. 기준), 교육부와 연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확대 추진
- 찾아가는 서민 대상 법률복지 시스템인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체계의 연계 추진